[별표 2] 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

(단위 : 퍼센트)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용도별</th><th colspan="3">공급지역</th></tr>
<tr><th>수도・부산권</th><th>광역시</th><th>기타지역</th></tr>
<tr><td rowspan="5">조성원가 이하</td><td>○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td><td></td><td></td><td></td></tr>
<tr><td>- 60㎡이하 주택용지</td><td rowspan="2">60
수도권: 80
부산권: 75</td><td>60</td><td>60</td></tr>
<tr><td>-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td><td>70</td><td>60</td></tr>
<tr><td>○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제외)
- 60㎡이하 주택용지</td><td rowspan="2">60
수도권: 85(100)
부산권: 80(90)</td><td rowspan="2">60
70(90)</td><td rowspan="2">60
60(80)</td></tr>
<tr><td>-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td></tr>
<tr><td>○ 공립학교용지
(공립 유치원・초・중・고)</td><td>무상</td><td>무상</td><td>무상</td></tr>
<tr><td>○ 국립 유치원용지</td><td colspan="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 60%</td></tr>
<tr><td rowspan="3">조성원가 수 준</td><td>○ 공공용지</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 협의양도인택지(단독주택용지)</td><td>수도권:감정평가액
부산권: 110</td><td>110</td><td>110</td></tr>
<tr><td>○ 사립학교용지
(유치원・초・중・고)</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 rowspan="9">감정가격등</td><td>○ 단독주택건설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제외)</td><td>감정평가액</td><td>감정평가액</td><td>감정평가액</td></tr>
<tr><td>○ 국민주택규모의 용지</td><td></td><td></td><td></td></tr>
<tr><td>- 60㎡이하 주택용지</td><td>”</td><td>”</td><td>”</td></tr>
<tr><td>-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td><td>”</td><td>”</td><td>”</td></tr>
<tr><td>○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초과 주택용지)</td><td>”</td><td>”</td><td>”</td></tr>
<tr><td>○ 임대주택건설용지
(85㎡초과 149㎡이하 주택용지)</td><td>”</td><td>”</td><td>”</td></tr>
<tr><td>○ 공공용지</td><td>”</td><td>”</td><td>”</td></tr>
<tr><td>○ 상업용지 등(영 제24조제3항)</td><td colspan="3">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td></tr>
<tr><td>○ 주상복합용지</td><td colspan="3">・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td></tr>
<tr><td>○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td><td colspan="3">・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td></tr>
</table>

주 :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공공용지와 그 밖의 공공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 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4.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5.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6. 주택건설용지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다만, 85㎡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를 위한 주택공급기준(전체 호수 대비 최소 공급비율, 주택규모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공급한다.
7.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에 우선공급하는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비주거부분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